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-65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. 05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의결주문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재활용품의 원활한 수집·선별처리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
하기 위하여, 의류수거함 운영·관리자에게 징수하는 사용료와 그 밖의
수입금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재원으로 조성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6조제3항
신설에 따른 기금 재원 조성 근거규정 신설(안 제3조제3항)
- 나. 기타 재활용품의 판매 등의 사유로 수입금 발생 시 재활용품 판매
대금 기금의 재원조성 근거규정 신설(안 제3조제4항)

4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지방자치법」 제 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

2)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20. 04. 16. ~ 05. 06. (제출된 의견 없음)

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해당없음

3)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: 해당없음

4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
5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해당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6조제3항에
따른 사용료
4. 그 밖의 수입금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 · 2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3조(기금의 조성) ----- 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「<u>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</u>」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</p> <p>4. <u>그 밖의 수입금</u></p>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
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이 일부개정 조례 시행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이 없음.

4. 작성자 : 행정관리국 청소행정과 한윤선 (☎ 3153-9214)